

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	보도자료	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과장 정창성 (044-205-2321) 사무관 임태규 (044-205-2327)
 관계부처 합동	2019년 10월 22일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과장 김용훈 (042-481-5051) 사무관 한재균 (042-481-5978)

특허청,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**-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담 심사체계 구축 및 산업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확대 -**

- 특허청은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바이오헬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하는 ‘융복합기술심사국’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특허심사 조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한다.
- 22일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특허청(청장 박원주)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, 특허심사1·2·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, 융복합기술심사국, 전기통신기술심사국, 화학생명기술심사국,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.
-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4국 25과 10팀 931명이었던 특허심사 조직 규모는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확대된다.
-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·빅데이터심사과, 사물인터넷심사과,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, 지능형로봇심사과, 자율주행심사팀,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·팀을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하게 된다. 우선심사는 최종 심사결정까지 약 5.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에 비해 약 10.7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짧다.
-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.

- 또,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‘전기·통신기술’, ‘화학·생명기술’, ‘기계·금속기술’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,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.
- 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,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.
- 특히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.
- 이밖에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,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·영업비밀·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도록 했다.
-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심사·심판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증원해(5명)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·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.
-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이번 조직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하게 됐다”면서 “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업 구조를 ‘혁신 선도형 산업구조’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,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아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- 정창성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은 “소재·부품·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”라며 “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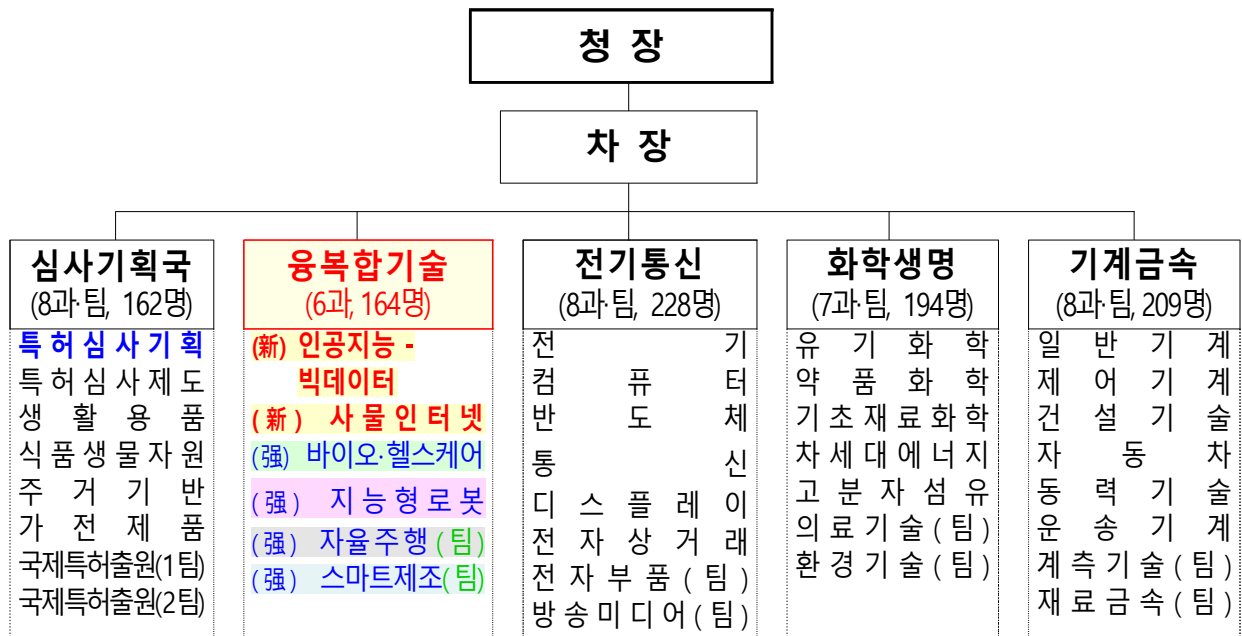
참고1

특허심사조직 개편 전후 조직도

개편 前 : 4국 25과 10팀, 931명



개편 後 : 5국 27과 10팀, 957 / (+1국 +2과, 26명)



참고2

산업재산권 등 보호범위 및 관련근거

구 분			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·시정 권고 (부정경쟁방지법 §7·8)	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(사법경찰직무법 §5·6)
부정경 쟁행위	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제1호	(가목) 상품주체 혼동행위	'87. 1. 1 시행 ~ ('86. 12. 31 개정)	'10. 8. 5 시행 ~ ('10. 5. 4 개정)
		(나목) 영업주체 혼동행위		X
		(다목) 저명상표 희석화행위	'01. 7. 1 시행 ~ ('01. 2. 3 개정)	X
		(라목) 원산지 오인행위		X
		(마목) 생산지 오인행위	'87. 1. 1 시행 ~ ('86. 12. 31 개정)	X
		(바목) 상품품질 오인행위		X
		(사목) 대리인의 무단 상표사용 행위	'01. 7. 1 시행 ~ ('01. 2. 3 개정)	X
		(아목)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	X ('04. 7. 21 신설되었으나, 조사·시정권고 대상 아님)	X
		(자목) 상품형태 모방행위	'17. 7. 18 시행 ~ ('17. 1. 17 개정)	'19. 3. 19 시행 ~ ('18.12.18 개정)
		(차목) 아이디어 탈취행위	'18. 7. 18 시행 ('18. 4. 17 개정) '18.4.3 시정명령 및 불이행죄 발의(홍의락 의원) (산자중기위 법안소위)	X
		(카목)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	X ('14. 1. 31. 신설되었으나, 조사·시정권고 대상 아님)	X
	부정경쟁방지 법 제3조	국기·국장 등의 사용금지	'87. 1. 1 시행 ~ ('86. 12. 31 개정)	X
	부정경쟁방지 법 제3조의2	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	'11. 10. 1 시행 ~ ('11. 6. 30 개정)	X
	부정경쟁방지 법 개정 발의	공사·공단 명칭 부정사용 행위	'18.2.5 송옥주 의원 (산자중기위 법안소위)	X
영업 비밀	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	(제2·3호) 영업비밀 침해행위	'18.4.2 홍의락 의원발의 (산자중기위 법안소위)	'19. 3. 19 시행 ~ ('18.12.18 개정)
산 업 재 산 권	특허법	특허권·전용실시권 침해행위	X	
	디자인보호법	디자인·전용실시권 침해행위	X	
	상표법	상표권·전용사용권 침해행위	X	'10. 8. 5 시행 ~ ('10. 5. 4 개정)